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 김용민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5. 5.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5.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6.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2.11.)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의원)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

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불과합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 후보군이 사실상 고위 법관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성별·세대·직업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과 후보자 중 상당수가 50대 남성, 고위 법관 출신, 특정 대학 출신에 집중되어 있어 구성의 획일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대법관 수 증가는 매년 약 4만건의 상고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들의 재판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대법관이 임용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과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과 관련하여 대법관 수 증가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대법관 임명방식 등의 변화 없이 대법관 수 확대만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 도입,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김용민의원안은 증원되는 대법관 16명을 2년간 8명씩, 장경태의원안은 증원되는 대법관 86명을 3년간 28명, 29명, 29명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는 현행 대법관 교체시기, 국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 절차, 다수 대법관 일시 증원 시 적임자 충원 가능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최혁진 위원: 대법관 증원 필수. 특정 대학 출신이 판사로 임용되

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됨. 연차적으로 증원하되 대법원 이전도 필수

- 곽규택 위원: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안임. 대법관 증원 후 새로운 전원합의체를 설치하여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 송석준 위원: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임.
- 이성윤 위원: 소부 4개 기준으로 대법관의 수는 26명이 적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하는 내용으로 부칙 수정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